

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】

1996. 10. 14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10. 1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0. 9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0. 14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호)

가. 제 안 이 유

- 서산시 대산출장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『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』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대산출장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대산출장소장 직렬 조정 승인 ('96. 9. 4. 지방행정사무관 → 지방행정. 환경 5급)에 따라 서산시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없었음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02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(제 호)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6. 10. 1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0. / 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서산시 대산출장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『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
조례』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대산출장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
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임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 을 “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” 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소장)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<u>지방행정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</p>	<p>제4조(소장) ① ----- <u>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</u> ----- -----</p>